

##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김기욱	66.03.10.	업무정지 4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4. 1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김기웅	54.06.14.	업무정지 4.5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4. 30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신수명	68.03.17.	업무정지 4.5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4. 30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이기훈	79.02.04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3. 1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윤호근	88.01.10.	업무정지 12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12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전선희	85.03.30.	업무정지 12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12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김성근	67.08.03.	업무정지 12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12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허혜선	74.04.24.	업무정지 12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12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박서린	79.07.26.	업무정지 12개월 (2022. 12. 16. ~ 2023. 12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
### 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 1]
- 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 3]
- 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[별표 2]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기타방법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